

1998년이후 폐지 및 보완된 식품관련 규제

1. 폐 지

규 제 사 무 명	규 제 내 용	정 비 내 용
1. 건강보조식품판매업의 신고 (법 제22조 및 영 제7조)	○ 건강보조식품판매업을 신고 대상업종으로 규정	○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5호나.(7)의 건강보조식품판매업 삭제
2. 식품 관련 영업의 휴업신고 (법 제22조제4항, 규칙 제29조)	○ 식품관련 영업자가 휴업, 재개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	○ 식품위생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중 휴업·재개업신고규정 삭제
3. 녹색신고제도(법 제16조, 규칙 제11조의3)	○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가 농약등을 신고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사하는등 우대조치	○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녹색신고조항 삭제
4.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허가 제한(법 제24조)	○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허가 제한	○ 법 제24조제1항제5호 삭제
5.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등에 대한 영업허가 제한(법 제24조)	○ 집행유예자등에 대한 영업허가 제한	○ 규칙 제22조[별지 제13호서식]의 신원증명란 삭제
6. 식품제조 및接客영업허가 시 내부신원조회(법 제24조 「별지 제13호」서식)	○ 식품제조 및接客영업 허가 신청시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신원조회	○ 규칙 제22조[별지 제13호서식]의 신원증명란 삭제
7. 식품위생관리인의 관리의무 (법 제28조제2항)	○ 식품위생관리인의 의무를 부여함	○ 법 제28조제2항 삭제

규제사무명	규제내용	정비내용
8.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방해 금지 및 협조(법 제28조제3항)	○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 및 업무수행상의 협조를 구함	○ 법 제28조제3항 삭제
9. 식품위생관리인의 선임(해임) 신고(법 제28조제4항)	○ 식품위생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시 신고를 규정함	○ 법 제28조제4항 삭제
10. 영업시설 이용의 거부금지(법 제33조)	○ 식품접객업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시설 이용의 거부금지	○ 법 제33조 삭제
11. 식품위생관리인 의무고용(법 제28조, 영 제15조 내지 제17조, 규칙 제38조)	○ 식품제조가공업, 즉석판매 제조·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는 식품위생관리인을 고용하고 영업허가관청에 선·해임신고 - 위생관리인 고용대상영업 - 위생관리인의 자격 및 직무 - 영업자의 위생관리인 직무방해금지	○ 법 제28조제1항 삭제
12.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시설개수명령(법 제57조제3항, 영 제35조)	○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시설개수 명령	○ 법 제57조제3항 삭제
13. 식중독사망자 사체해부(법 제68조)	○ 식중독등 식품사고로 인한 사망한 자의 사체를 유족의 동의를 얻어 해부	○ 법 제68조 삭제
14. 인삼제품류의 제품검사 수수료 부과(법 제13조 및 규칙 제7조)	○ 인삼제품의 검사 수수료를 판매예정가의 5/1,000의 범위내에서 부과	○ 규칙 제7조제3항[별표 5의2]
15. 제품검사의 표시(법 제14조 및 규칙 제10조)	○ 제품검사 합격품은 합격증지 부착	○ 법 제14조 삭제
16. 음식점영업자중 자격소지자에 대한 사전위생교육(법 제27조, 규칙 제37조의2)	○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사전에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	○ 법 제27조제2항에 자격소지자는 신규교육면제 근거 명시
17. 식품위생감시 단속권 일원화(법 제20조, 풍속영업규제등에관한법률)	○ 현행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이 있는 자만 업소출입, 검사가 가능하나 - 안전청, 시·도 및 경찰 등이 중복하여 업소 출입·단속	○ 시·도는 풍속이외의 위생에 관한 사항만 지도·점검토록 단속 업무지침 마련·시행

규제사무명	규제내용	정비내용
18.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고용금지 연령(법 제31조 및 규칙 제42조 「별표 13」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(20세미만)에게 주류제공금지 ○ 유흥주점에서 20세미만의 자를 미성년자 고용금지 	○ 규칙 제42조[별표 13]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의 “라”호 및 “하”호의 연령을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을 인용하여 연령통일
19. 휴게음식점영업소내의 주류반입 및 보관 금지(법 제31조 및 규칙 제42조 「별표 13」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휴게음식점내에는 업소내에 주류를 반입 또는 보관금지(손님이 반입하는 경우 포함) ○ 다만, 알코올 1도내의 주류는 제외 	○ 규칙 제42조[별표13]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의 “거”호의 주류반입 금지규정 삭제
20. 식품접객업의 조리장, 객석의 변경허가(시행규칙 제23조)	○ 식품접객업의 허가사항중 조리장, 객석의 시설변경시 허가	○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 삭제
21. 시설무단멸실에 의한 허가취소시 일정기간 동일업종 허가제한(법 제24조)	○ 시설무단멸실에 의한 허가취소의 경우 6개월간 동일장소에서는 동일업종 허가제한	○ 법 제24조제1항제2호 내용보완
22. 식품 등의 취급시 의무(법 제3조, 규칙 제2조)	○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	○ 규칙 제2조본문 내용수정 및 “별표1” 삭제
23. 조건부영업허가(법 제23조, 영 제14조, 규칙 제30조, 제31조)	○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을 갖추 것을 조건으로 부여하여 허가	○ 법 제23조 삭제
24. 인삼제품 사전제품검사(법 제13조, 영 제3조)	○ 인삼제품류는 사전제품검사를 받은 후 합격증지 부착 유통·판매	○ 시행령 제3조중 인삼제품류 삭제
25. 식품첨가물 사전제품검사(법 제13조, 영 제3조)	○ 식품첨가물중 타르색소·타르색소제거·보존료·보존료제제는 사전제품검사를 받은 후 합격증지 부착 유통·판매	○ 시행령 제3조중 식품첨가물 삭제
26. 품목제조보고시 유통기한 설정사유 보고(법 제22조 제6항, 규칙 제25조)	○ 품목제조보고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함께 제출	○ 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중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삭제

규제사무명	규제내용	정비내용
27. 식품첨가물의 제품검사수수료 부과(제13조, 규칙 제7조)	○ 식품첨가물의 채취단위마다 1,200원의 제품검사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	○ 규칙 제7조제3항중 식품첨가물 수수료규정 삭제
28. 식품제조·가공업등의 작업장에 조명도기준 설정(법 제21조, 규칙 제20조, 별표 9)	○ 시설기준에 작업장의 밝기를 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규정 - 식품제조·가공업소, 식품첨가물제조업소,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소, 식품냉동·냉장업소, 용기·포장류제조업소 : 75룩스이상 - 선상수산식품제조·가공업소 : 50룩스이상	○ 규칙 제20조[별표 9] 업종별시설기준중 작업장 밝기 규정 삭제
29. 식품위생관리인 이중선임제한(법 제29조제1항, 제31조, 규칙 제40조, 별표 12, 제9호)	○ 식품위생관리인은 다른 영업소, 타법령에 의한 영업장에 이중으로 취업금지	○ 규칙 제40조[별표 12] 식품제조·가공영업자준수사항중 제9호 삭제
30. 불합격품의 판매금지(법 제15조)	○ 제품검사결과 불합격품, 합격표시 미표시 제품은 판매금지	○ 법 제15조 삭제
31. 포장·용기 파손식품 판매금지(법 제31조, 규칙 제42조, 별표 13)	○ 포장·용기 파손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의 운반·진열금지	○ 규칙 제42조[별표 13] 식품소분·판매영업자준수사항중 "가"호 삭제
32. 식품제조가공업 이면기재사항(시설배치도, 변경 및 처분사항)(법 제22조, 규칙 제22조·제3항, 별지 제14호서식)	○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증 이면에 시설배치도, 허가사항 변경사항(대표자, 상호 등),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사항을 기록하고 기록자가 날인	○ 규칙 제22조제3항[별지 제14호서식] 영업허가증 서식란에서 시설배치도 기재란 등 삭제
33. 사전제품검사제도(건강보조식품)(법 제13조, 영 제3조, 규칙 제7조)	○ 건강보조식품등은 사전에 생산제품에 대하여 제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합격증지를 부착후 유통·판매	○ 법 제12조 삭제

규 제 사 무 명	규 제 내 용	정 비 내 용
34. 식품제조·가공업등 허가사항 변경허가(법 제22조제1항, 규칙 제22조제1항, 제23조제1항)	○ 영업자는 허가받은 시설의 원료처리실, 제조·가공·포장실의 시설 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	○ 영 제11조제2호 내지 제5호 삭제
35.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신청시 시설배치도 제출(법 제22조제1항, 규칙 제22조))	○ 영업허가 신청시 시설배치도, 위생교육필증 등 제출	○ 규칙 제22조제1항제1호 삭제
36. 식품연질캡슐성형위탁업소 지정규정(법 제21조, 규칙 제20조, 별표 9)	○ 건강보조식품·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중 연질캡슐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성형 및 충전은 안전청장이 식품제조·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에 위탁생산가능	○ 규칙 제20조[별표 9] 시설제조·가공업 시설기준 “자”.(2) 중 위탁업소 지정내용 삭제

2. 보 완

규 제 사 무 명	규 제 내 용	정 비 내 용
1. 허가표시·과대광고의 금지 (규칙 제3조 및 「별표 3」)	○ 건강보조식품,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의 유용성 표현에 있어 허위표시·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범위 규정	○ 규칙 제6조[별표3]의 유용성 허용범위 조정
2. 자가품질검사의 의무(법 제19조 및 규칙 제19조 「별표 8」)	○ 식품등을 제조·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기가 제조하는 식품등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	○ 규칙 제19조중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면제규정 보완
3. 식품접객영업의 허가(법 제22조 및 영 제9조)	○ 식품접객업(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, 단란주점, 유흥주점)의 허가	○ 시행령 제9조의 영업허가대상에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제외하고 시행령 제13조의 신고대상업종으로 추가
4.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의 허가 (법 제22조 및 규칙 제24조의2 별표 11)	○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의 영업 허가	○ 시행령 제9조의 영업허가대상에서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을 제외하고 시행령 제13조의 신고대상업종으로 추가
5.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허가 제한(법 제24조)	○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2년간 동종의 영업허가 제한	○ 법 제24조제1항제3호중 제한기간 “2년”을 “1년”으로 조정
6. 업종별시설기준(법 제21조, 규칙 제20조 별표 9)	○ 허가 및 신고대상업에 대한 업종별 공통시설기준 및 세부시설기준을 규정	○ 규칙 제20조[별표 9] 시설기준중 “아”의 식품의 특성별 시설기준 삭제
7. 유통기한의 규정 및 설정 (법 제7조, 제31조 및 규칙 제40조, 별표 12)	○ 현재의 유통기한은 판매기한으로서,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판매금지	○ 식품등의 표시기준(안전청고시 제98-96호, 98. 10. 7) 개정
8. 식품접객영업업의 미성년자接客원고용시 처분기준 강화 (법 제55조 내지 제59조, 규칙 제53조 「별표 15」)	○ 식품접객영업업의 미성년자 유흥接客원고용시 과징금처분 가능	○ 규칙 제53조[별표 15] 행정처분기준중 1차적발시 영업정지 1월을 하가취소로 강화
9. 수입식품등정밀검사 기간 (법 제16조, 규칙 제11조)	○ 정밀검사 처리기간을 18일로 규정	○ 규칙 제11조[별지 제4호서식]의 정밀검사 처리기간 18일을 15일로 단축

규제사무명	규제내용	정비내용
10. 식품등의 표시기준(법 제10조,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(고시 제98-5호))	○ 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 식품, 방법 및 세부표시기준	○ 식품등의 표시기준(안전청 고시 제98-96호, 98. 10. 7) 개정
11.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(법 제31조, 규칙 제42조)	○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	○ 규칙 제42조[별표 13]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중 청소년보호법 등과 통일 조정
12. 조리사·영양사의 결격사유(법 제38조)	○ 조리사·영양사의 결격사유(정신질환자, 전염병환자, 약물중독자, 정신지체인)	○ 법 제38조제1호중 정신지체인 삭제
13. 조리사·영양사 보수교육 의무(법 제40조, 규칙 제49조, 제50조)	○ 조리사 및 영양사의 보수교육 - 조리사 매년 5시간 - 영양사 매년 10시간	○ 규칙 제50조중 - 조리사보수교육은 매년 5시간에서 매년 4시간으로 - 영양사보수교육은 매년 10시간에서 매년 8시간으로 조정
14. 지하수사용영업자의 영업허가 신청시 수질검사성적서 제출의무(영 제10조, 규칙 제22조)	○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영업자의 영업허가 신청시 수질검사성적서 제출(지하수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영업자까지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)	○ 규칙 제22조제1항제8호중 지하수를 식품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제출 생략
15. 식품관련영업의 허가(법 제22조, 제23조, 영 제9조 내지 제14조, 규칙 제22조, 제23조, 제27조, 제28조)	○ 식품영업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함 - 허가대상영업 : 식품제조·가공업,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, 식품첨가물제조업, 식품보존업, 식품접객업	○ 시행령 제9조의 영업허가대 상업종 신고제로 조정 - 신고제 전환업종 · 식품제조·가공업 ·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 · 식품냉동·냉장업 · 휴게음식점 · 일반음식점
16. 품목제조 보고시 성분배합비율 보고(법 제22조제6항, 규칙 제25조, 제26조제2항, 별지 제20호서식, 별지 제24호서식)	○ 영업자는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 또는 성분배합비율을 보고서식에 의거 허가기관에 제출	○ 규칙 제25조 [별지 제20호서식] 식품 및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시 성분배합비율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토록 하던 것을 영업자가 관리토록 조정

규 제 사 무 명	규 제 내 용	정 비 내 용
17. 휴게·일반음식점 조건부 영업허가(법 제23조, 영 제14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란주점, 유흥주점 영업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아 시설을 갖춘 후 영업을 가능하나 ○ 일반음식점등은 선시설 후 허가 제도로써 형평성이 결여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 제23조 삭제
18. 조리사 및 영양사 의무고용 (법 제34조, 제35조 영 제 18조, 제19조 규칙 제44조, 제45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리사 의무고용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품접객업종 복어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 - 식품접객업종 허가면적이 120㎡이상인 업소(다만, 식사류 미조리시 제외) - 상시 1회 50인 이상 이용 집단급식소(다만, 중소기업자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제외) ○ 영양사 의무고용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시 1회 50인(제조업의 경우 100인) 이상 이용 집단급식소 - 상시 1회 급식인원 2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집단급식소는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 · 동일 시·군·구 또는 동일 공업단지내인 경우 · 1인의 영양사에 급식인원 400인을 초과해서는 아니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리사 의무고용 폐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 18조중 복어조리·판매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업소 의무규정 삭제 ○ 영양사 의무고용 폐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행령 제19조중 제조업소 의무고용내용 삭제
19.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소분·판매금지품목(법 제21조 제2항, 영 제7조, 규칙 제21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중 위해우려가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소분·판매를 못하도록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류(엿류 제외), 다류(날개들이 소포장제품 제외), 건강보조식품, 분말제품, 장류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규칙 제21조제1항중 소분금지품목을 축소조정

(자료제공 ; 식품의약품안전청/식음료신문)